



技術의 競爭力과 技術人

Engineers Standing at Competitive Edge in Technology

趙 昌 彙*
Jo, Chang Hwi

1. 序言

우리의 經濟가 市場의 完全開放을 앞두고 희망과 기대보다 念慮의 수준을 넘어 積極對處하지 않으면 우리 經濟가 좌초할지도 모른다는 危機感 마저 팽배(澎湃)해지고 있다. 이러한 危機感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競爭力이 아직은 世界化水準에 와 있지 않다는 스스로의 自覺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어떤 競爭力이 떨어질까? 이 問題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는 이미 지난 느낌이지만 대부분의 技術人들이 느끼는 어떤 特定分野의 技術적 落後도 문제이겠으나 그 외에도 우리의 慣行이나 精神的인 경쟁력의 位置는 어디쯤일까 하는 생각을 빼놓을 수 없다.

2. 精神力도 競爭力이다

技術人 중에서 상당수의 建設技術人들이 指彈의 대상이 되고 社會的 또는 法的인 희생양이 되었으며 국가적으로 不實을 量產한 不名譽를 감수해야 했던 상당수의 기억을 갖고있다. 여기서 우리는 國家 技術水準의 전반적인 位相 墜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技術的인 競爭力 뿐이 아니라 精神的인 경쟁력도 深刻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比重에서 輕重을 가릴 수 없다고 본다. 똑같은 不幸한 前轍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하여서도 그렇고 技術人의 位相을 世界水準으로 끌어올리지 않고는 國

際 競爭社會에서 밀려나는 技術集團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現實을 直視해야한다. 다시 말해 기술도 중요하지만 技術인의 信賴도 그만큼 중요한 것을 認識해야 한다. 그러나 技術人들의 自淨 能力에는 限界가 있게 마련이다. 技術인들 스스로를 위해서 專門家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가 他人을 위한 또는 多衆을 위한 서비스이기에 技術인 자신은 물론 서비스를 要求하는 多數個人이든 所屬集團이든 公共기관이든 共同으로 淨化되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道德과 倫理와 德目과 義務와 公利를 기본으로 우리 社會 모두가 尊重 할 수 있는 즉 技術인들이 지키고 社會가 그것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職業倫理의 새로운 照明과 基礎를 다져야 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環境에서 養成된 技術인이 技術과 倫理性이 겸비된 世界化된 技術人, 競爭力 있는 技術人이라 思料된다.

3. 技術人的 責任과 義務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不實의 記憶을 돌이켜 보면 부산 구포 선로사건, 대구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서초동 삼풍백화점 사건 등 대형 사건에 많은 建設技術인들이 직접 關여되어 있었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방향 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진다. 자신과 所屬集團과 公共社會중 어느 쪽이 더 尊重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 建築施工技術士, 현대건설 기술연구소 전무이사.

더 重要하게 檢討되어야 하는지, 기술인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眞摯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기술인들이 使用者나 顧客에 대하여 어느 정도 責任을 지며 公共의 安全과 福祉를 어느 정도 尊重해야 하는지, 倫理的인 判斷基準이 있고 또 그대로 實踐했다라면 大衆에게 준 엄청난 被害와 使用者나 顧客에게 준 엄청난 損失을 豫防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個人的 利益 또는 所屬 集團의 이익에 執着한 小乘적 利害는 所屬集團과 公共에 엄청난 被害와 自己破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보여준 事件으로 인식 될 것이다.

4. 새로운 倫理觀

미국의 1000명의 회사任員을 상대로 어떤 職業이 가장 윤리적인가, 說問 조사 결과(ZINCKGRAF, 1992) 아래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

技術人	34%
會計士	24%
醫師	17%
齒科醫師	7%
法律家	8%
其他	10%

또한 미국 技術人協會가 그의 會員들을 상대로 조사한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頻度를 조사한 결과 ("Survey Finds Ethics a Concern" 1990)는 아래와 같다.

가끔	45%
빈번히	25%
드물게	13%
이따금	13%
무응답	4%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술인이 誘惑에 露出된 환경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에도 가장 倫理的인 職業人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직업윤리를 지키기는 어려운 일임에도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은 기술인 個人的의 도덕관과 윤리관이 높은 水準에 있을 뿐 아니라 기술인들이 健全한 社會의 保護아래 있음을 否認 못할 것이다. 우리 社會의 예를 들면 心性이 理性的이기보다 때때로 情實에 얽매이기 쉬운 國民性(東洋의이라고 보는 見解도 있지만)이 도덕과 윤리가 狹義的으로 이해되고 '위'와 '아래', '나'와 '상대'의 2元的 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본다. 따라서 技術人이 그와 直接的인 '상대'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 이기 때문에 도외시된 公共에게 犯하기 쉬운 不實이 만연돼 있다고 생각된다. 윤리관, 도덕관도 多元적 사고에 의하여 큰 우리-未來까지 생각한 公共 즉 社會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職業倫理의 定立

일반적으로 行爲의 옳고 그름이 道德的 판단과 法律的인 판단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도덕적으로 옳으나 법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과 개인의 도덕적 관계는 기술인의 윤리적 선택이 最多數를 위한 最大의 善을 追求해야 하는 公利주의에 의해 審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그러나 善과 惡을 구분 짓고 또한 결과에 상관없이 지켜져야 하는 義務의 존재와 윤리적으로 침해받지 않을 權利의 존재 및 개인에 局限시키지 않고 集團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새로운 職業倫理가 定立 되어야 하고 公開되고 一般化되어 社會와 그 안에 存在하는 技術人의 位相이 確固해져야 한다. 이것은 곧 기술인들이 스스로 강한 윤리적 판단능력과 실천의식을 갖고 일에 임해야 하고 또한 지금까지 共犯관계에 있으면서 集團利己로 기술인의 잘못만 질타(叱咤)하던 社會도 責任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價値觀과 生活哲學의 樹立이 될 것이다.

6. 結 言

技術의 信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기술을 담고 있는 기술인의 行動規範에 의해서 기술의 適用 成果나 結果가 나온다면 기술 그 自體 보다는 기술인의 信賴度가 더 중요하게 浮刻될 수 있음을 認識해야 한다. 기술의 尖端化에만 정신이 팔린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술의 信賴度는 옳게 評價되지 못하고 疎外 당하고 말 것이다. 기술인들의 人格도 競爭에서 큰 比重을 차지함을 알아야 하며 이에 우리도 우리의 倫理觀念을 再整備하고 人格도 世界化 趨勢에 맞춰 나갈 것을 提言 하며 참고로 미국 技術人協會(NSPE)의 윤리규정을 紹介하여 기술인의 位相을 바로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혹 翻譯의 誤謬가 있더라도 諒解하고 읽어주시기 바란다.

技術人을 위한 倫理規定

기술용역은 중요하고 학습(學習)으로 터득되는 직업이다. 전문직의 일원(一員)으로 그들의 업무가 모든 사람의 삶의 질(質)에 직접적(直接的)이고 중대(重大)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인이 제공하는 용역(用役)은 정직성(正直性), 공정성(公平性), 공정성(公正性) 및 평등성(平等性)을 요구하며 공공(公共)의 건강(健康), 안전(安全) 및 복리(福利)를 수호(守護)하는 데에 바쳐져야 한다. 기술인은 그들의 전문직 실무(實務)에서 공공(公共), 고객(顧客), 사용자(使用者-雇用人) 및 직업(職業)의 대리(代理)로 가장 높은 윤리적(倫理的) 행동(行動) 원칙에 부합(符合)하는 전문직의 행위기준(行爲基準)하에서 행(行)하여야 한다.

I. 기본규범(基本規範)

기술인은 직무달성(職務達成)에 있어

1. 직무(職務) 수행(遂行)에서 공공의 안전, 건강

및 복리를 최상(最上)으로 유지(維持)한다.

2. 자격(資格)있는 업무(業務)에 한(限)해 용역을 수행한다.
3. 객관적(客觀的)이고 진실(眞實) 되게 공개진술을 한다.
4. 모든 사용자나 고객을 위한 사안(事案)에 신뢰성 있는 대리인 또는 수임자(受任者)로 행동한다.
5. 전문직 채용(採用)을 요청할 때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II. 실행 규율(實行規律)

1. 기술인은 직무(職務)수행시 공공(公共)의 안전(安全), 건강(健康), 복리(福利)를 최상(最上)으로 유지(維持)해야 한다.
- 1) 기술인은 항상 자신의 기본 의무가 공공의 안전, 건강, 재산, 복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만일 기술인의 판단이 공공의 안전, 건강, 재산,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환경 하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 사용자, 고객 또는 관계 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 2) 기술인은 안전, 건강, 재산, 복리의 기준에 부합(符合)하는 기술용역 서류에만 서명한다.
- 3) 기술인은 공인되었거나 법이나 본 윤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객 또는 사용자의 사전(事前) 동의(同意) 없이 직무(職務) 수행중·취득한 사실(事實), 자료 또는 정보를 유출(流出)하지 않아야 한다.
- 4) 기술인은 허위나 부정한 사업 또는 그와 같은 직업상 실행을 한다고 믿을 만 한 회사나 고객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 또는 회사명의 사용을 허용(許容)하지도 않고 사업상 협력도 하지 않아야 한다.
- 5) 본 규정의 위반을 인지(認知)한 기술인은 관련 정보의 제공이나 기타 협력으로 해당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2. 기술인은 자격(資格)있는 분야(分野)의 용역만

수행 해야한다.

- 1) 기술인은 교육이나 경력으로 참여하는 특정기술 분야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임을 해야한다.
- 2) 기술인은 자신의 자격이 부족한 사안(事案)을 다룬 어떤 계획서나 서류, 또는 그의 지시나 감독 하에서 작성되지 않은 어떤 계획서나 서류에 서명(署名)해서는 안된다.
- 3) 기술인은 단위(單位) 전문기술 분야에 인정(認定)받은 기술자가 참여(參與)하고 해당 분야의 서류에 당해인(當該人)이 서명(署名) 및 인증(認證)을 하는 경우에만 임용(任用)을 받고 전체 과제(全體課題)의 조정책임(調整責任)을 지며 모든 서류에 서명(署名) 및 인증(認證)을 할 수 있다.
3. 기술인은 객관적(客觀的)이고 진실(眞實)한 자세로 공개진술(公開陳述)을 해야한다.
 - 1) 기술인은 업무보고, 진술 및 증언-그들의 보고서, 진술, 증언에 포함된, 이와 관련 또는 유첨된 모든 정보도 해당-에 객관적이고 진실 되어야 한다.
 - 2) 기술인은 주제(主題) 사실(事實)에 대한 충분한 지식(知識)과 자격(資格)을 갖춘 경우에만 기술주제(技術主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개할 수 있다.
 - 3) 기술인은 이해 당사자(當事者)에게 영향을 받거나 그의 보수를 받는 기술사안(技術事案)에 대하여는 논평의 서두에 대변(代辯)하려는 이해 당사자를 명백히 밝히고,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는 어떤 진술이나 비평 또는 논쟁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기술인은 모든 사용자 및 고객을 위한 사안에(事案)에 항상 신뢰성(信賴性) 있는 대리인(代理人) 혹은 수임자(受任者)로 일한다.
 - 1) 기술인은 그들의 판단이나 서비스의 질(質)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 같은 사업상 제휴, 이해관계 또는 어떤 상황(狀況)을 사용자나 고객에게 신속히 알려서 알고 있거나 가능성 있

는 모든 이해분쟁은 즉시 노출시켜야 한다.

- 2) 기술인은 동일과제(同一課題) 및 그에 관련된 용역에 일방(一方) 이상으로부터 보상이나 금전, 기타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상황이 완전히 공개되었고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기술인은 수급자(受給者) 또는 그들의 관련회사(關聯會社) 또는 수임중(受任中)인 사용자나 고객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대상으로부터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 4) 정부 또는 준 정부기관 부처에서 관료로, 고문으로 또는 고용인으로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은 사적(私的) 또는 공적(公的)인 용역 실무에서 그 또는 그가 소속한 조직에 의해서 요청되었거나 마련된 전문업 용역에 대하여는 결의(決議)에 참여하면 안된다.
- 5) 자신이 수장(首長)이나 관료로서 일하는 정부 기관으로부터는 용역계약을 요청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5. 기술인은 전문직 고용을 요청할 때 거짓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 1) 기술인은 그 자신과 그가 속한 협회, 학력 또는 전문직 자격(면허)에 위조 또는 허위 기재를 용납하면 안된다. 기술인은 수임 전에 사안(事案)에 대한 책무(責務)의 등급을 허위 기재하거나 과장하면 안된다. 고용요청시 제시된 광고 인쇄물이나 다른 제시물(提示物)에도 그들의 자격이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意圖)와 목적(目的)으로 사용자, 고용인, 협회, 합자회사나 과거 성취에 관련된 사실을 허위 기재해서는 안된다.
 - 2) 기술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受注)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칠, 혹은 그같은 효과가 있다고 응당히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정략적 혜택을 제안, 요청, 또는 수수(收受)하면 안된다. 일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선물이나 귀중품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고용인(顧傭人)

에게 성의(誠意)로, 또는 상관례(商關禮)로, 혹은 그에게 고용된 영업 대리인에게 주는 것 외에는 수수를 위해서 수수료(手數料), 배당(配當) 또는 중개료(仲介料)를 지불해서는 안된다.

Ⅲ. 직업의무(職業義務)

1. 기술인은 그들의 직업적 관계에서 최고 기준(基準)의 성실로서 지도(指導)되어야 한다.
 - 1) 기술인은 잘못된 경우 자신의 실수(失手)를 인정하고 순응(順應)하며 자기의 결정을 정당화(正當化)하기 위해 사실(事實)을 왜곡(歪曲)하거나 변조(變造)하기를 삼가해야 한다.
 - 2) 기술인은 과제(課題)가 성공적(成功的)이지 못할 것으로 믿으면 이를 고객이나 사용자에게 조언해 주어야 한다.
 - 3) 기술인은 본업(本業) 또는 이해(利害)에 지장(支障)을 줄 다른 외부고용을 거절하며, 받아들일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4) 기술인은 허위나 사주(使囑)로 다른 사용자의 기술인을 유혹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 5) 기술인은 파업, 농성대열 또는 집단적 강압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6) 기술인은 직업적 존엄성(尊嚴性)과 성실성을 희생(犧牲)하며 개인적인 이익 증진(增進)을 도모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2. 기술인은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奉仕)에 노력한다.
 - 1) 기술인은 시민 업무에 건설적인 봉사(奉仕)와 소속 공동체의 안전, 건강 및 복지(福祉)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찾아야 한다.
 - 2) 기술인은 공공의 건강, 안전, 복리의 안전 및 인정된 기술기준(技術基準)에 부합되지 않게 설계된 계획서 및/또는 시방서의 완성이나 서명 또는 인증(認證)을 해서는 안된다. 고객이나 사용자가 그와 같은 탈(脫) 직업적인 행위를 고집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더 이

상의 수입업무를 철회(撤回)해야 한다.

- 3) 기술인은 공학(工學) 및 그 성취(成就)에 대한 공개된 지식과 이해(理解)의 폭을 넓히며 오전(誤傳)과 오해(誤解)로부터 기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3. 기술인은 직업의 신뢰를 추락(墜落) 시키거나 대중(大衆)을 기만(欺瞞)하는 모든 행동이나 실행을 피해야 한다.
 - 1) 기술인은 사실을 왜곡(歪曲)한 자료를 실었거나, 오해(誤解)없도록 실어야 할 자료를 누락 시키거나,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부당한 기대를 유발(誘發)하거나, 장래의 성사(成事)를 예시(豫示)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은 피해야 한다.
 - 2) 전술한 바에 부합(符合)하게 직원의 채용광고를 할 수 있다.
 - 3) 전술한 바에 부합하게 전문, 비전문지에 기사(記事)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내용이 타인에 의해 수행된 일로 저자(著者)에게 신용(信用)을 암시(暗示)해서는 안된다.
4. 기술인은 전(前), 현(現)사용자나 고객의 동의 없이 사업상 일이나 기술적 처리에 연관된 비밀정보를 공개하면 안된다.
 - 1) 타인에게 고용된 기술인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승진운동 또는 일을 위한 협상이나, 대표(代表)자리로 전직(轉職)운동을 하거나, 당해(當該) 용역에서 취득(取得)된 특정, 특수 지식을 활용(活用)해서는 안된다.
 - 2) 기술인은 전(前) 사용자나 고객을 대신하여 특수, 특정 지식을 취득한 특정과제나 처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이해 당사자(當事者)들의 동의 없이 참여하거나 이해상반(利害相反)을 표현하면 안된다.
5. 기술인은 이해분쟁(利害分爭)에 의해 직업적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 기술인은 자재, 장비 납품자로부터 그들의 제품을 적용(適用)해주는 조건으로 금전, 기타 혜택, 무료제공의 기술제안(技術提案) 등을 받

- 아들이면 안된다.
- 2) 기술인은 수급자 또는 고객 또는 사용자와 업무적으로 관련된 자로부터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수수료(手數料)나, 수고비(手苦費)를 받아서는 안된다.
 6. 기술인은 기술업무에 약정된 적절하고 충분한 보수(報酬) 원칙을 지지(支持)한다.
 - 1) 기술인은 채용(採用)을 구실로 고용인 또는 직업소개소로부터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
 - 2) 기술인은 다른 기술인을 채용할 때 전문직 자격(專門職 資格)에 맞는 급여(給與)를 제공한다.
 7. 기술인은 다른 기술인을 부당하게 비평하거나 부적절하고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취업, 승진, 전문업 계약을 기도(企圖)해서는 안된다.
 - 1) 기술인은 그들의 기술적 판단이 양보(讓步)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조건부로 업무상 수수료를 요청, 제안 또는 수용(受容)하면 안된다.
 - 2) 급료를 받는 기술인은 사용자의 정책에 부합하고 윤리적 고려에도 합치하는 범위에 한해서 시간제 외업(外業)을 받아들여야 한다.
 - 3) 기술인은 동의 없이 개인적인 외업(外業)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의 장비, 보급품, 실험실, 또는 사무실 설비를 사용해선 안된다.
 8. 기술인은 악의(惡意)로 또는 위계(爲計)로, 직(直), 간접적(間接的)으로 전문직의 명성이나 장래를, 혹은 타 기술인의 관행(慣行)이나 고용(雇傭)을 위해(爲害)하거나 타 기술인의 일을 불성실하게 비평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비(非)윤리적 또는 탈법적 적용의 혐의(嫌疑)를 알고 있는 기술인은 관계당국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야한다.
 - 1) 사적(私的)인 일을 하는 기술인은 다른 기술인의 작업내용을 동일(同一) 고객을 위해서 검토해서는 안된다. 단 상대(相對) 기술인이 알고 있거나 상대 기술인의 업무가 종료(終了)되었을 경우는 예외다.
 - 2) 정부, 산업체 또는 교육계 종사(從事) 기술인은 그들의 고용 조건에 의해 요구될 때는 타 기술인의 작업내용을 검토(檢討), 평가(評價)할 자격이 주어진다.
 - 3) 영업 또는 산업계 종사 기술인은 제시(提示)된 제품을 타사(他社) 제품과 기술적인 비교를 할 자격이 주어진다.
 9. 기술인은 그들의 직업적 활동에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기술인의 이해가 보호될 수 없는 총체적인 태만(怠慢)이 아니면 그들의 수행으로 얻어지는 전문용역의 대가(代價)를 추구해도 된다.
 - 1) 기술인은 그들의 기술 업무가 주 정부의 등 록법에 따라야 한다.
 - 2) 기술인은 비윤리적 행위를 목적으로 비기술인, 조합 또는 동업자를 '위장(僞裝)'으로 관련을 맺어서는 안된다. 그렇다해도 모든 직업적 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술인은 기술용역의 귀속권(歸屬權)은 당연적(當然的) 귀속권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타인의 독점적(獨占的) 이익을 인정(認定)해야 한다.
 - 1) 기술인은 가능하면 언제든지 개별적(個別的)으로 책임진 설계(設計), 발명(發明), 저술(著述), 기타 성취물(成就物)에 책임진 사람의 이름을 거명(擧名)해야 한다.
 - 2) 고객에게서 제공되어 사용한 설계는 고객의 재산권이며 허가 없이 타인을 위하여 이를 복제(複製)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3) 기술인은 복제권(複製權) 또는 특허권(特許權)이 될 수 있는 개선(改善), 계획(計劃), 설계(設計), 발명(發明), 또는 기타 기록물(記錄物)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일은 타인의 일을 맡기 전(前)에 소유권에 관하여 확실한 합의(合意)를 하도록 해야 한다.
 - 4) 사용자의 일에 독점적(獨占的)으로 적용(適用)된 설계, 자료, 기록 및 주석(註釋)은 사용자의 재산(財産)이다.
 11. 기술인은 타 기술인 및 학생들과 정보(情報)

와 경험(經驗)을 교류(交流)함으로 직업의 효율(效率性)성을 확대하고 그들 감독 하에 있는 기술인들에게 직업인의 자기개발(自己啓發)과 승진을 도모할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기술인은 채용(採用)된 기술인의 향학열(向學熱)을 독려(督勵)해야 한다.
- 2) 기술인은 채용된 기술인이 전문직 모임, 기술 협회 모임 등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 하도록 권장(勸獎)해야 한다.
- 3) 기술인은 채용된 기술인이 최단 시일 내에 등록(登錄)되도록 재촉(再促)해야 한다.
- 4) 기술인은 가능하면 수련(修練)과 경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인의 임무에

임용(任用) 되어야 하며 보조(補助)나 기능직보다 상위(上位) 업무에 임용되어야 한다.

- 5) 기술인은 장래 채용될 기술인에게 작업조건 및 제시된 채용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알도록 해야한다. 채용한 후에도 변경이 있으면 이를 알게 해야한다.

●참고문헌

1. F. Lawrence Bennett, P.E, 1996 THE MANAGEMENT OF ENGINEERING.
2. 손기상 편저, 1990. 건설공사 안전해석론.
3. 국토개발연구원, 1995. 한국 건설산업의 구조전망 및 대책(이재우 한은석).